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8. 18 선고 2021가합1030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

피고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미경

변론 종결2022. 6. 16.

판결 선고2022. 8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4. 20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4. 20. 접수 제446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2020. 4. 경을 기준으로 C에 대하여 688,000,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, 즉 피보전채권이 있다. C은 2020. 4. 20.경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,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.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2.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원고는 2019. 11. 4. C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외 1필지 지상의 E 관광숙박시설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을 공사대금 1,155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, 이하 같다)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(이하 '이 사건 공사계약'이라 한다).
- 2) 원고와 C은, 2019. 12. 18.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2,085,000,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, 2019. 12. 24.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'C은 2019. 12. 24.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2,085,000,000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, 2020. 1. 31. 1,155,000,000원을, 2020. 4. 30. 930,000,000원을 각 지급하고, C이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2%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'는 내용의 공정증서(법무법인 F 증서 2019년 제1302호, 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를 작성하였다.
- 3) 원고와 C은 2020. 4. 6. 이 사건 공사대금을 1,633,850,000원으로 감액하고, 그중 1,155,000,000원은 2020. 3. 27., 나머지 478,850,000원은 2020. 4. 30. 각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.
- 4)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20. 3. 27. 1,155,000,000원을, 2020. 4. 29. 242,000,000원을 각 지급하였다.

5) 원고는 2021. 4. 8. G, H, I에 대하여 '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에 연대보증책임이 있다'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(이 법원 2021가합101962호), G 등은 위 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'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다'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감정을 신청하였다. 위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감정인 J의 감정결과,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는 345,509,000원 내지 432,065,000원으로 산정되었다.

6) C은 2020. 12. 21. 원고에 대하여 '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변제 또는 C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'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(이 법원 2020가합108539호). 이 법원은 2022. 5. 25.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경 합의, 변제 및 상계로 모두 소멸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22. 6. 14.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

원고는 2020. 4.경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(피보전채권)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으나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(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설했더라도, 그와 같은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).

다. 소결론

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유현영

판사최리니

판사김은수

별지